

2026-2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

1. 교내장학금 신청대상 : 8학기 이내 재학생

※ 선출직 간부장학금: 8학기 초과자 지급가능

※ **교내장학금 이중수혜 및 오(誤)지급 시 학생지원과로 반환해야함**

2. 교내장학금 추천기간

구분	신청/추천기간		장학금 종류
	1학기	2학기	
감면	1월 (등록금고지전)	7월 (등록금고지전)	학업우수, 이공계인력육성, 체육특기, 보훈, 한마음, 북한이탈주민, 외국어우수, 고시(최종합격), 간부, 가족사랑 등
지급	3월 중	9월 중	체육특기, 공로, 고시, 봉사(지정/일반), 간부 등
	4월 중	10월 중	보훈, 한마음, 북한이탈주민, 간부, 가족사랑, 지방자치발전, 인천대사랑(도전/열정) 등
	5월 중	11월 중	우수신입생(생활비), 공로, 고시, 외국어우수 등

※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, 해당 장학금 신청/추천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

※ 상세 기간 및 내용은 대학홈페이지> 인천대소식> 공지사항> 장학금> 교내장학금 확인

3. 교내장학금 신청 유의사항

○ 다년장학금의 경우도 매 학기 신청 필수

- 보훈, 북한이탈주민, 한마음, 고시, 수시-우수, 입학.단과수석, 우수신입생(생활비) 등의 장학금 대상자도 학생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 필수

○ 휴학생 및 휴학 예정자의 장학금 신청

- 휴학생 : 장학금 신청 불가
- 휴학 예정자 : 장학금 승인 및 **등록금 납부기간 내 당해학기 등록처리 확인*** 후 휴학 하여야만 장학금 감면·지급 가능

* 「통합정보시스템」 학사행정> 학적> 개인학적조회> 등록 : 당해학기 ‘완납’ 확인

※ 단, 간부 및 봉사장학금의 경우 등록 휴학을 하더라도 장학금 감면/지급 불가(수혜 시 반환)

○ 입학 후 취득한 공인외국어성적, 고시 합격증, 대회 수상 실적 등만 인정

○ 직전학기 수강한 모든 과목이 이수인정(Pass/Fail) 과목인 경우

- 외국어우수, 공로, 인천대사랑, 가족사랑 등: 성적이 Pass로 평점평균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 성적 적용

- ex) 2025-2학기 17학점 이수 후 평점평균 3.5 취득 & 2026-1학기 현장실습 12학점 이수 후 성적이 Pass인 경우, 2025-2학기 성적 적용
- ex) 수강신청 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/Fail로 기재되는 경우, 산출된 평점평균 적용
→ 직전학기 현장실습 12학점 PASS 및 OCU 1과목 3.5인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3.5로 반영

○ 직전학기에 교환학생이었던 경우, 장학금별 최종 추천기간까지 성적 미산출시 성적이 산출된 최근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

○ 학과 추천여부 확인

- 신청내역이 「학과/부서대기」로 되어 있는 경우 학과/부서에서 추천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학과/부서에 문의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

○ 감면 장학금 신청 전 확인 必

- 감면 장학금 승인 시 등록금고지서 상의 납입금액은 등록금액에서 장학금액만큼 감액되어 표시되므로, 사전에 부모님 회사 등록금 지원 여부 등 확인
※ 사문서 위조 등 추후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장학금이 미반영된 등록금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
- 감면 장학금 승인 후 **등록금을 납부한 경우, 해당 장학금 포기 불가**
※ 감면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, 등록금 납부 이전에 ‘교내장학금 포기 신청서’ 제출

○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(단, 감면은 예외)

- 분납 신청자의 경우에도 등록금 전액이 완납 처리되어야만 장학금 지급 가능
-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공단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대출을 받은 경우, 학생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관으로 대출 상환 처리

○ 교내장학금 감면·지급 확정 후 타 교내장학금으로 변경 불가

- ex) 학업우수장학금 감면 확정 이후 해당 장학금을 포기하고 외국어우수장학금으로 변경 불가
- ex) 외국어우수장학금(B) 수혜 후 외국어우수장학금(A)으로 변경 불가

○ 교내장학금 반환

- 교내장학금 수혜 후 타 교외장학금으로 변경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: ‘교내장학금

포기 신청서' 제출 및 교내장학금 반환

※ 교외장학금 종류별로 반환기준이 다르므로 학생지원과(032-835-9260)로 문의바람

※ 교내장학금 추천기간 이후 장학생 변경은 불가하므로 교외장학금 대상 여부 사전 확인 必

※ 포기한 교내장학금은 번복 불가

-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후 자퇴 또는 제적 처리된 학생의 경우 :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내장학금 반환

○ 자국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 외국인학생은 교내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(2019-1학기 신(편)입생부터)

4. 장학금별 유의사항

○ 외국어우수장학금

- 제출서류 :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의 공인어학성적표
- ※ 공인어학성적표 상의 유효기간이 학과 추천기간 마감일까지 남아있어야 함

○ 인천대사랑장학금(도전/열정)

- 지원대상 : 당해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

○ 봉사(일반)장학금

- 지원대상 :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유형 I · II · 다자녀 신청자
- 근무기간 : 정해진 개월 근무
- 근무시간 : 09:00 ~ 18:00까지(토요일, 공휴일 근무 불가)
- 유의사항
 - 교내봉사 시작일 기준, 다음달 15일 전후로 장학금 지급
 - 매월 100시간까지 입력 가능(단, 하루 8시간 이상 입력 불가)

○ 공로장학금

- 지원범위
 - 1학기 : 전년도 6월 ~ 당해연도 5월 수상내역
 - 2학기 : 전년도 12월 ~ 당해연도 11월 수상내역
 - ※ 단, 수상은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의 수상확인서로 신청 가능
 - 당해학기 복학생은 직전 휴학학기 중 취득한 수상내역도 인정
 - (ex) 2025학년도 휴학 중 국내(전국규모) · 국제대회 수상 후 2026-1학기에 복학한 경우 : 2025-1, 2025-2학기 중 취득한 실적으로 2026-1학기에 신청 가능

- 장학금액

구분	단체	개인
국제 각종대회 입상자	70만원	100만원
국내(전국규모) 각종대회 입상자	30만원	50만원
서울주요일간지 신춘문에 당선자 및 권위 있는 문예지 추천자	해당없음	100만원

- 유의사항 : 10개미만 컨소시엄 주관 대회 수상실적(2026.3월 수상부터), 명확한 자격이 없는 단순 표창 등은 인정하지 않음

○ **보훈장학금**

- 제출서류
 - (본인/배우자)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,
 - (자녀/손자녀*)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*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
 - ※ 재입학 대상자는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를 재입학 당해학기에 재발급 받아 제출
- 성적기준 : 직전학기 평균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(본인 및 배우자는 제한없음)
 - ※ **성적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에 포함**
- 지원범위 : 전적대학 포함 8학기까지 지원(본인 및 배우자는 제한없음)

○ **간부장학금**

- 지원대상
 - 1차 추천 : 타 등록금성 교내장학금을 받지 않는 간부장학생
 - 2·3차 추천 : 1차에 미추천된 간부장학생
 - ※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경우 간부장학금 수혜 불가
- 유의사항
 - 장학금 수혜 후 학기 중간에 직책 수행을 종료할 경우(휴학, 자퇴, 제적 등) : 장학금 전액 반납
 - 장학생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휴학, 질병 등 부득이 직책 수행이 어려운 경우 : 수업일수 1/3선 이내 장학생 변경 (학생지원과에 변경요청 공문 발송)
 - ※ 당해학기 교환학생 간부장학금 수혜 불가
 - ※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,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(장학생 추천 시 자격 요건 철저 확인 요망)

○ **가족사랑장학금**

- 지원대상 : 2명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(3명 이상 재학 시 2명 신청 가능), **학생신청일 기준 신청학생과 가족 모두 등록금을 완납하고 재학 중이어야 함**
- 성적기준 : 직전학기 평점평균 2.75 이상(장학금 신청자만 해당)

- 제출서류 :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부모명의로 발급,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)

○ 한마음장학금

- 지원대상 : 종합장애등급 -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(구) 장애등급 1, 2, 3급)
- 제출서류 :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

○ 북한이탈주민장학금

- 지원대상 :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 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(한국국적 취득자)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- 제출서류

본인	자녀
① 학력인정증명서*	① 학력인정증명서*
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	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
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	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: 자녀명의
	④ 부모(택1)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* 학력인정서류

◦ 북한학력(전문대졸이상) : 학력인정증명 공문 ◦ 북한학력(고등학교) : 학력인정증명서 ◦ 국내고등학교 졸업 :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◦ 검정고시 합격자 :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◦ 해외고등학교졸업(예정)자 : 아스포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(예정)증명서

- 성적기준 : 직전 2개 학기 연속 평균성적 70점미만 또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, 장학금 지원 불가

※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에 포함되며, 타대학에 신·편입학한 경우에도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

- 지원범위 :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

- 유의사항

- 2022년 이후 신·편입생은 입학 후 1년 내 법정의무교육 미수강시,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(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참고)
- 법령개정으로 신규대상자가 된 재학생의 경우, 법령개정 전에 종료된 학기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 불가

교내장학금 신청/추천 오류 사례

연번	장학금명	오류내용	점검사항
1	가족사랑	장학금 신청자 본인과 가족(형제자매 등)을 동일하게 입력한 경우	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학번을 각각 구분하여 입력
2		첨부서류 내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	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또는 “*” 처리
3	외국어우수 등	등록금성 장학금(국가장학금 등)을 전액 수혜 받은 이연복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	복학 전 등록금성 장학금(등록금 전액) 수혜 여부 확인
4	인천대사랑 등	국가장학금을 미신청한 경우	당해학기 국가장학금 1·2·다자녀 유형 신청 후, 소득구간 확인
5	공로	지역대회에서 입상한 경우	전국 또는 국제대회 수상내역만 인정
6	학업우수/간부 등	감면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납부 이후 장학금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	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감면 장학금 포기가 불가하므로, 등록금 납부 전 장학금 감면 내역 확인

장학금 포기 신청서

구 분	☒ 교내장학금 ☐ 교외장학금 ☐ 국가장학금 ☐ 기타()		
	※ 해당되는 부분에 ☒ 표시		
포기희망 장학금명		학 기	2026-2학기
성 명		학 번	
학과(부)		연 락 처	
포기사유	[사유입력]으로 인해 [포기장학금명]장학금을 포기합니다.		
위와 같은 사유로 장학금 포기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6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인천대학교 총장 귀하			